

의안번호	제2748호
의결 연월일	2024. .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4. 2. 5.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8
----------	------

발의연월일: 2024. 2. 5.

발 의 자: 김석한 의원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6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 (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9호
 - 입법예고 기간: 2024. 2. 5.(월) ~ 2024. 2. 13.(화)[8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1] **[현행]**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1] **(개정안)** <2024. 00. 00.>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35조(의정비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의정비심의회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